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 안내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의 기반시설 구축과 재활용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재활용시설, 기술개발, 경영안정등을 위하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

개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94년도부터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니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2004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규모, 지원대상자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규모 및 지원대상자

지원분야	융자규모	융자지원 대상자	지원용도
시설자금	400억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융자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로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또는 사업자 단체	-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기술개발 자금	100억원 별도구분)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제3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지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 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 및 시제품 제작용 기계장치 및 기자재구입비, 소요인건비, 제경비
폐기물 감량화 시설자금	50억원	- 폐기물관리법제2조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공정개선 및 제비용에 필요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및 공장건축비
경영안정 자금	100억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제31조에 의한 재활용사업자 및 중고 가전제품, 가구류 등에 대한 수리판매사업자	- 재활용을 위한 원료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재활용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연료비, 제경비
유통판매 지원자금	50억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제31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리필등 재사용제품을 포함한다)외의 일반제조상품을 금액 기준으로 30%이내 취급하는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 및 중고 가전제품, 가구류 등에 대한 수리판매사업자	- 제품 유통·판매에 따른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실내장식비(신규분배 한한 C), 매장매입비, 건축비

(주) 융자 대상시설은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용자조건

지원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지원한도액 및 비율	상환방법
시설자금	연4.87% (변동금리)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억원이하 제조시설 : 40억원이하 건축비 : 8억원이하 운반장비 : 2억원이하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마다 균등분할 상환
기술개발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억원이하 	
폐기물 감량화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재이용시설, 공정개선시설 : 5억원 공정건축비(폐기물재이용시설에 한함) : 3억원 	
경영안정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억원이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이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에 의한 매출액 이내 창업 사업자의 경우 총 소요자금의 20%이내 	
유통·판매 지원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억원이하 	

1. 금리는 실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용자금 대출에 따른 담보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지원현황

(2004.1.7 현재)(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A)	신청	승인(B)	지원	잔액(A-B)
용자 지원	2003	60,000	175,290	60,000	39,392	0
	2004	60,000	52,984	50,601	0	0

(주) 용자금 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가용자금으로 용자승인인원 계속 진행

용자체계도

1. 운용요강 고시 및 공고 - 매년고시 및 신문공고 - 지원대상, 한도, 금리 거치 기간등
--

2. 용자신청서 교부 및 접수 - 분사, 지사 및 사업소 - 공고일로부터 2003.12.10일 까지 우편 및 인편접수
--

3. 예비검토 - 사업계획에따른 소요장비 - 시설검토 및 신청액 조정

4. 용자심사 및 결과통보 - 실무심사 - 심사위원회소집의결 - 신청자등에 통보
--

5. 용자금 대여신청 및 대여 - 사업 진행사항에 따른 대출 신청 - 금융기관은 공사에 대여신청
--

6. 사업진행 및 완료보고 - 사업계획과 비교검토 - 사업계획변경 검토승인 - 자금집행 적정성여부 -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1차기성과 인출시 현장조사

7. 사업완료업체 현장조사 - 신청내역과 비교검토 - 각종인허가 사항 - 자금집행 적정성 여부 - 미 이행부분 회수

8. 사업성과보고(1·2차)분석 - 사업완료후 1년간 성과보고 - 결산완료후 15일 이내 지원회과 및 애로사항 검토 분석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자원재생공사 자금용자팀(032 - 560 - 1661 ~ 5), 각지사 및 사업소,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 접수 : 접수기간 : 2004.1.5 ~ 2004. 12. 10일까지

장 소	소 재 지	연 락 처
분사 자금용자팀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032-560-1660~4 조석연 sycho@koreco.or.kr
수도권지사 재활용산업지원팀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7-8 금경리젠트 301호	02-2204-6452 차동현 dhcar77@naver.com 2204-6455 (사업관리 안은일)
강원지사 재활용산업지원팀	강원 춘천시 은의동 512-3	033-240-9532 강경직 k920095@koreco.or.kr
충북지사 재활용산업지원팀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62	043-215-0160~4 조종덕 jongduk@hanmail.net
대전·충남지사 재활용산업지원팀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440 월산지방산업단지	041-866-0543 이지홍 tiger0714@hanmail.net
전북지사 재활용산업지원팀	전북 정읍 하북동 848 정읍2공단 16블럭	063-532-6004 박근기 pgk21@hanmail.net
광주·전남지사 재활용산업지원팀	전남 화순군 이양면 포평리 1198-1 이양농공단지 내	061-381-8741~4 김원석 6103332@hanmail.net
대구·경북지사 재활용산업지원팀	대구달서구 대천동 900-1	053-580-7533 홍순락 hsrak@koreco.or.kr
부산·경남지사 재활용산업지원팀	부산 사상구 괴법동 560-19 신한은행 사상지점 4층	051-312-4672~5 이순진 anne0812@hanmail.net
제주출장소	제주 회천동 294-22	064-721-6542 안경만 jejuan@koreco.or.kr